

# 수사경찰의 성범죄에 대한 2차피해 인식요인 탐색

## Influencing Factors of Attitude toward Secondary Victimization in Sexual Assault Cases by the Police Officers

권혜림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Hye-Rim Kwon(joy7974@naver.com)

### 요약

수사경찰관들은 업무 특성상 사건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한 과정에서 지나친 의심을 지닐 가능성이 높고, 이는 2차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우려가 종종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성폭력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2차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탐색된 영향요인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성폭력 2차피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여 경찰의 신뢰회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경찰공무원 개인적 특성 중에서 강간통념, 폭력허용도, 적대적 성차별이 의심과 편견에 영향을 미쳤으며, 민감성부족에는 강간통념과 적대적 성차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관련 특성 중에서는 재직기간과 성폭력 사건 담당경험이 민감성 부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2차피해를 감소·예방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사건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담당 경찰관들의 성인지각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중심어 : | 성폭력범죄 | 2차피해태도 | 강간통념 | 폭력허용도 | 양가적 성차별주의 |

### Abstract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investigating sexual assault cases are likely to have suspicions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to find out the truth about the case, which leads to secondary victimization to the victims, and these concerns are often unveiled as social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e research question that what the causes of secondary victimization derived from the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sexual assault investigation 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tribute to the restoration of the trust of the police by preventing or minimizing the secondary victimization of sexual assault case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Among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police officers, rape myth, tolerance n violence and hostile gender discrimination influenced suspicion and prejudice, and rape myth and hostile gender discrimination affected the lack of sensitivity. Among the workplace-related characteristics, the duration of employment and experience in sexual assault cases affects the lack of sensitivity.

In addition to the revision of the law an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sexual assault, the prejudice against the sexual assault inherent in the attitudes and behaviors of the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the sexual assault cases should be improved.

■ keyword : | Sexual Assault | Attitude toward Secondary Victimization | Rape myth | Tolerance on Violence | Ambivalent Sexual Discrimination |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8020081)

접수일자 : 2018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 2018년 11월 18일

수정일자 : 2018년 11월 18일

교신저자 : 권혜림, e-mail : joy7974@naver.com

## I. 서론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은 사건 발생 자체로 인한 피해(1차피해)를 넘어 추후 사법기관이나 가족, 지인, 여론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한 정신적·사회적 피해(2차피해)의 연속적 메커니즘에 의해 증폭된다[1].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하며, 보호가 필요한 매우 민감한 심리적 상황에서 경찰관과 마주하게 된다. 이때 경찰의 대응태도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부분을 넘어 고소와 증언 여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2].

최근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제·개정, 성폭력관련 기관의 확대 등 2차피해를 줄이려는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에서도 곤경에 처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수사방침 및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수사업무 특성상 사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피해자의 유책성 부분 등을 살피기 위한 노력은 불가피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특정한 여성피해자를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2차피해 유발을 넘어 실제적 진실발견을 왜곡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을 점검하고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수사담당 경찰관들의 성폭력 2차피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수사담당 경찰관들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문제 확인 및 개선 필요성 제기 수준의 기초적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해석함에 일정한 편견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3]와 피해자수사 개선방안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경찰이 지니고 있는 선입견 및 고정관념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4]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교통사고조사를 위해 실시된 폴리그라프검사의 결과서를 토대로 특정집단이 거짓말을 더 많이 하리라는 수사관들의 편견에 근거가 없음을 밝힌 연구결과도 있다[5]. 경찰관과 상담사의 2차피해 태도를 비교한 연구[6]도 있으나, 이는 전문직간

연계필요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구체적인 2차피해 태도 영향요인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사라는 업무특성상 경찰관들이 성폭력 피해여성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제 2의 가해자가 될 염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이 연구는 ‘성폭력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2차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탐색된 영향요인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성폭력 2차피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여 경찰의 신뢰회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경찰공무원 개인의 성 인식(양가적 성차별주의, 강간통념)이 그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성폭력 수사 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실성 여부를 사정하는데 치중하는 이유가 성폭력에 대한 편견에서 나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추후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이나 중요성과 연결하여 현실적인 정책적 제언이 가능하리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성폭력범죄의 2차피해에 대한 논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직접 겪게 되는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1차 피해’라고 하며, 형사사법기관 등의 배려가 부족한 대응에 의해 재차 유발되는 범죄피해를 ‘2차피해’라고 한다. 즉, 성폭력 범죄의 경우 2차피해란 성폭력으로 인해 겪는 신체적·정신적인 직접적 후유증 이외에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나 잘못된 통념으로 피해자가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불이익이나 심리적인 고통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혼자서 감내해야 하며, 평생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성폭력범죄는 피해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신고 되지 않아 암수범죄율이 높은 범죄로 분류된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숨기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지닌 편향된

인식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라고 하면 ‘평판이 나쁜’, ‘몸가짐이 바르지 못한’, ‘문제성이 농후한’ 여성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고정관념이 적극적인 피해구제의 방안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성폭력 피해자들로 하여금 소극적 대처나 은폐를 조장하게 된다. 설사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형사사법 절차 진행 중에 피해를 유발하거나 종종 가해자보다 더 나쁜 여자로 취급받는 경우가 있기에 이중의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7].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2차피해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이루어진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폭력 상담 건수는 2,753건(4,201회)이었으며, 2차피해 호소 건수는 133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에서 24.6%를 차지하였다. 다음의 [표 1]은 대표적인 2차피해 유형과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성폭력 2차피해의 유형과 횟수(2008-2009년)

	피해 유형	횟수
1	피해자 비난, 화간 의심 등	72회
2	무시, 무성의, 불친절, 부정적 견해	54회
3	합의 강요	47회
4	사생활침해, 신변위협감	24회
5	절차에 대한 고지 및 안내 부족	23회
6	반쪽진술, 신뢰관계인 동성 거부, 무고위협	19회
7	기타(접수거부, 변호인선임권 요구 등)	19회

자료 : 한국성폭력상담소 내부자료 재구성, 피해 호소내용 중복체크

1995년 이후 형법 제32장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되며 성폭력에 대한 ‘정조’적 접근의 법률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성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담당자들이 지니고 있는 수많은 통념들과 맞서야 한다.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받는 가장 흔한 질문은 “성관계 경험이 있나?”라는 것이다. 피해자의 성력(性歷)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은 결국 실제적 진위를 파악한다는 미명하에 피해자가 어떤 성향의 여성인가와 범죄피해의 진

정성을 연결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하였거나 피의자와 합의한 성관계 이후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고소를 제기한 ‘질 나쁜 여성’으로 몰아가기도 한다[8]. 결국 이러한 질문구조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피해자’와 ‘당할 만한 피해자’로 이분화 하는 것이다.

## 2. 수사과정에서의 2차피해 실태

보호받아야 할 성폭력 피해자는 그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해 2차피해를 경험하게 된다[9]. 한국성폭력상담소(2002)의 수사·공판 단계별 2차피해 사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성폭력으로 인한 2차피해는 수사과정(52.2%)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다음으로 수사·공판과정 이외(21.1%), 공판과정(11.7%)의 순으로 나타났다[10]. 이는 2차피해의 주요 가해자가 수사과정의 경찰관이라는 씁쓸한 현실을 보여준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거나 실제적 진실발견이라는 명목아래 진술반복 및 피해상황의 회상이나 불필요한 재연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사건과 무관한 사적 질문이나 평소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아 피해자가 오히려 성폭력을 유발했다고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 여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수모를 경험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11][12]. 성폭력범죄에서 폭행과 협박은 구성요건에 해당되며, 이를 알아보기 위해 폭력발생시 피해자의 동의여부나 가해자의 강압적·물리적인 힘 사용되었는가에 그 논점이 집중된다[13]. 특히,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 경우에는 신체적 상해여부가 동의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성폭력에 대한 지배적 편견 가운데 피해자의 옷 찢김이나 신체적 상해가 없다면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피해자로서의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성은 신체적 상해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가능해야 한다[14].

성폭력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은 피해자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치중하고[15], 이러한 행동은 성폭력에 대한 특정 편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피해

자의 저항과 상해여부,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 합의한 성관계라는 수사관의 편견으로 성폭력피해자는 피해 자체를 부인당하거나 형사사법체계에 의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두 번의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셈이다. 다시 말해 ‘진짜 피해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가 혹은 ‘진짜 성폭력’이 아닐 수 있다는 수사관의 편견은 피해여성들이 수사관들로부터 2차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다. 강간통념으로부터 성폭력의 ‘진짜 피해자’는 ‘낯선 이에 의해 강압적으로 당한, 저항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상해를 입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젊은 여성’이라는 편견이 형성된다[16].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경찰도 제도적 개혁을 실시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지속적 증가와 저조한 신고율(실제 발생률의 2.2-6.1% 정도), 그리고 오히려 감소추세인 기소율은 성폭력 피해자를 둘러싼 오랜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시사한다[17]. 즉,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미온적·소극적 수사와 2차피해가 여전히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18].

### 3. 2차피해 유발요인 검토

#### 3.1 왜곡된 성문화와 이중적 성규범

성폭력범죄에 대한 왜곡된 성문화와 잘못된 편견은 가해자의 행동을 정당화함으로써 또 다른 성폭력 범죄를 조장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는 스스로의 책임귀인을 통한 이중의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성폭력범죄를 범죄가 아닌 성관계라고 보고 피해자는 여성으로써의 순결을 잃었다는 잘못된 통념으로 피해사실 신고 자체를 주저하게 만든다.

여성주의 관점에서 성폭력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억압적이고 남성중심적인 남녀관계의 연장선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본다[19]. 우리 사회내 여성과 남성에게 이중적 성규범과 성폭력과 관련된 통념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들고, 크나큰 상처와 고통을 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피해자가 유발한 성폭력’이라는 통념은 형사사법과정에서 성폭력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에

게 오히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다. 성폭력 피해가 특정여성만의 문제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는 이러한 통념은 결국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모든 여성들에 대한 범죄피해 가능성을 부인하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20].

#### 3.2 수사경찰관의 그릇된 편견과 그 위험성

성폭력에 대한 수사경찰관의 통념은 형사사법처리 과정에서 성폭력의 존재여부와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며, 수사경찰관의 완고하고 강한 성차별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역전시키는 양상을 가져오기도 한다[21]. 즉,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가진 경찰관은 고소 여성들에 대한 낮은 신뢰와 수사과정이 왜곡을 통하여[22], 2차피해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그럼 경찰관들의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어느 정도일까?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다양한 직업군(경찰, 교사, 상담원 등)을 상대로 그들의 강간통념을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강간은 피해자의 책임성도 크다’, ‘저항을 강하게 하는 여자를 상대로 강간은 불가능하다’ 등의 강간통념이 수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경찰 집단이 가장 보수적이고 고정관념적인 집단으로 조사되었다[23]. 또한 성폭력관련 경찰과 상담사를 대상으로 2차피해 태도를 살펴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찰이 상담사에 비해 2차피해 태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6].

양가적 성차별주의란, 여성이 전통적인 성역할을 거부하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태도의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와 전통적 성역할을 수용하고 순종적인 여성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태도의 온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로 구분된다. 특히,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들은 여성을 순수하고 순결한 존재로 바라보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는 성폭력 피해자 비난을 설명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관계에서 발생한 강간사건의 경우 높은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지닌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4].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강간통념 수용도 간에 높은 정적 상관성이 확인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19]. Burt는 강간통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강간은 낯선 이에 의해 우발적으로 행해지고, 여성의 옷차림과 행동이 어느 정도 피해를 유발되며, 끝까지 저항하는 여성에 대한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였다[25].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지니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강간통념, 강간신화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강간통념 수용도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은 경찰관일수록 성폭력 피해자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하며,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심각하게 평가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의 처벌을 경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가벼운 형량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6].

또한 폭력에 대한 허용정도를 의미하는 폭력허용도가 2차피해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폭력에 대해 더 수용적일수록, 폭력을 행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7][28]. 따라서 수사담당 경찰관의 개인적 폭력허용도가 2차피해 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3.3 범죄통제지향적 하위문화의 문제점

경찰 하위문화는 오래 전부터 조직 내에서 전해 내려오는 비공식적인 관습이나 규율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찰이 일반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되는 반면 구성원들만의 높은 결속의 원인이자 결과이다[29]. 대표적인 경찰하위문화로는 비밀주의, 사회로부터 고립, 범죄통제 지향, 냉소주의 등이 있으며, 이러한 하위문화가 강한 경우 일반인을 적대적이고 믿지 못할 존재이며, 잠재적으로는 폭력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15]. 사회내 팽배한 이념이나 규범, 신념 등은 경찰 하위문화 내에서 생산과 재생산을 거듭하게 되는데, 성과 관련된 통념 역시 그러하다. 경찰조직 내에서 성폭력수사와 관련된 정책이나 절차가 바뀐다하더라도 수사활동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이러한 이유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범죄통제지향적인 경찰조직의 하위문화에 주

목하고, 2차피해 태도와 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는 개인 인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조직전반의 문화와 관련된 문제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조직문화와 관련된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2차피해 근절이 가능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범죄통제 지향적 하위문화를 많이 수용하는 경찰관일수록 범죄수사 시 수사대상에 대한 적대감이 더 강할 것이라 예상되며, 이는 2차피해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애초 연구계획은 조사대상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하려 하였으나 순환근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사부서 경찰관들과 과거 수사경험이 있는 지구대 근무 경찰관들로 확대 실시하였다. 또한 편의표본추출에 의하여 성폭력 사건 담당경험이 없는 경찰관들을 포함하여 추후 성폭력 수사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시기는 2016년 11월 20일부터 12월 25일까지였고, 총 5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402부가 회수되었다. 그 중에서 무응답률이 높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82부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으며, 통계프로그램 PC+ 21.0을 이용하였다.

### 2. 조사도구

양가적 성차별은 기존 해외의 척도(ASI: Ambivalent Sexism Inventory)의 문항을 토대로,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를 활용하였다[30][31]. 여성에게 행한 남성의 성적 공격을 정당화 또는 부인하거나 사소한 일로 치부하게 하며, 더 나아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를 조장[19]하기도 하는 강간통념은 Ward(1988)의 Attitudes toward Rape Victims Scale'(ARVS)를 번역한 일부 문항을 경찰조직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32]. 폭력허용도는 수사담당 경찰공무원이 폭력을 얼마나 허용적으로 생각하는지 폭력에 대한 태도 척도를 측정하였다[33].

성폭력 2차피해 태도는 성폭력 담당경찰관이 지니는 태도를 의미하며,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의심으로 피해자에 대한 민감성이나 배려가 부족하여 발생하게 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2차피해 척도를 종합하여 의심, 편견, 민감성 부족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6]. 구체적으로 의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구심을 품는 정도를 의미하며, 편견은 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편견의 정도를 말한다. 민감성 부족이란 사건 신고 이후에 피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는 정도를 말한다.

측정항목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폭력허용도(.849), 강간통념(.903), 적대적 성차별(.904), 온정적 성차별(.856), 범죄통제 지향주의(.678), 성폭력 2차피해 태도(.871)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IV. 분석결과 및 논의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표 2]는 연구에 포함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빈도와 유효퍼센트로 정리한 결과이며 결측값은 별도로 제거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인구사회학적·근무환경적 특성이 고르게 반영된 편이나, 성폭력 사건 수사경험 유무에 있어 경험이 없는 경찰관이 절반 가까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지구대의 경우 수사경험 있는 경찰관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경찰서나 경찰청, 지방청의 여성청소년, 수사/형사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중 상당수가 실제 성폭력 수사사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2011년 성폭력피해자전담조사팀, 2012년 성폭력특별수사, 2013년 성폭력전담수사팀 신설)과 상대적으로 재직기간이 짧고 30대 이하의 젊은 경찰관이 조사대상자에 많이 포함되었다는 점 등의 현실적인 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성폭력 사건수사 경험 유무에 따른 성폭력 2차피해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라 판단하고 추가적인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			구 분 빈도 (%)		
학력	고졸	79 20.7	근무부서	생활안전1	117 30.6
	전문대	29 7.6		생활안전2	43 11.3
	대학교	257 67.3		수사/형사	197 51.6
	대학원 이상	17 4.5		기타	25 6.5
결혼여부	미혼	59 15.4	자녀없음	62 16.4	
	기혼	323 84.6	자녀유무	315 83.6	
계급	순경	28 7.3	재직기간	5년 미만	54 14.2
	경장	45 11.8		5-10년 미만	69 18.2
	경사	138 36.2		10-15년 미만	85 22.4
	경위	133 34.9		15-20년 미만	56 14.8
	경감 이상	37 9.7		20년 이상	115 30.3
연령	30대 이하	165 43.2	근무기관	청/지방청	70 18.3
	40대	150 39.3		경찰서	273 71.5
	50대 이상	67 17.5		지구대	39 10.2
성별	남자	306 80.1	사건담당유무	없음	187 49.5
	여자	76 19.9		있음	191 50.5

생활안전 1=여성청소년, 생활안전2=지구대

수사담당 경찰관의 성폭력 2차피해 태도 영향요인을 탐색함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으로 양가적 성차별주의, 강간통념 수용도, 폭력허용도를 살펴보았다. 특히, 개인의 성과 관련된 인식을 검토하는 이유는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행동이 성폭력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서 나온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 2. 2차피해 인식 영향요인 탐색

###### 2.1 개인관련 특성

[표 3]는 경찰공무원 개인의 폭력허용도, 강간통념 그리고 적대적/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성폭력 2차피해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심의 경우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형 1의 설명력은 2.4%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개인관련 특성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의 설명력은 42.1%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강간통념( $\beta=.514, p<.001$ )과 폭력허용도( $\beta=.187, p<.001$ )는 정(+)적 영향력을 보였으며, 적대적 성차별( $\beta=.171, p<.01$ )도 성폭력 2차피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의 경우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형 1의 설명력은 6.1%였으며, 개인관련 특성을 추가 투입한 모형 2의 설명력은 45.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미혼



[표 5]은 경찰공무원의 조직문화관련 특성 중 범죄통제 지향주의가 성폭력 2차피해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민감성 부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편견의 경우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형 1의 설명력은 6.1%였으며, 범죄통제 지향적 문화 특성을 추가 투입한 모형 2의 설명력은 6.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V. 결론

이 연구는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고 정의를 수호해야 할 수사기관들이 오히려 잘못된 수사관행 및 수사태도로 인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강요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부조리한 현실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어지곤 한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보호받기보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계속 의심받는 사태가 벌어지며, 그 결과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2차피해를 겪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2차피해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수사관들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증거 없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 서기도 한다. 외형적인 상처가 없는 경우 강간 피해자의 반항정도를 의심하기도 하고, 피해여성의 전력을 들추며 모멸감을 주기도 한다. 또는 늦은 귀가나 음주, 옷차림을 질책하는 등의 사건 진위과악과는 무관한 질문을 하기도 한다[34]. 진짜 성폭력 또는 진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가진 수사관은 전형적 기준에 미부합시 피해사실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이어지게 된다. 피해자 고소의 확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소 행동이나 주위 평판 또는 과거 성경험 유무를 문제삼는다. 이처럼 수사관들의 편견은 성폭력 피해사실과 피해자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며, 제대로 된 피해자 처우를 방해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수사관의 편견, 의심, 그리고 민감성 부족 등의 2차피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분석 결과,

경찰관 개인관련 특성 중 강간통념과 폭력허용도, 적대적 성차별이 편견과 의심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민감성 부족에는 강간통념과 적대적 성차별이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수사과정에서 2차피해 유발 염려가 있는 질문의 사용여부와 수사관의 강간통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 강간통념이 높은 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폭력강도나 사정여부, 피해자의 저항정도, 사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음주여부 등 성폭력사건 구성요건 파악보다는 외적 요인에 치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강간통념이 높은 경찰관은 2차피해 유발 질문을 하면서도 이에 대해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2]. 즉, 성폭력 피해자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관들이 지닌 강간통념에 대한 교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혼경찰관일수록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편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견은 전형적인 피해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미혼경찰관을 대상으로 편견과 의심이 피해자 고통에 대한 둔감화를 통하여 의도치 않은 상처나 아픔을 줄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차별적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젊은 경찰관일수록 성폭력 피해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직기간과 성폭력 사건 담당경험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사건 담당경험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반복되는 일의 일부로 인식하고 피해자를 냉소적으로 대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입장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게 되면, 피해자를 대하는 민감성이 떨어지게 되고[35], 결국 2차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심리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태인 피해자는 경찰공무원의 언행 하나하나에 반응하게 되므로 수사담당자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더욱 민감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연구자가 성범죄사건 수사시 우리나라 경찰의 노력이나 성과를 전부 외면하거나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간 성폭력법의 개정과 제도 개혁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의해 성폭력



2차피해가 지속적으로 문제시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관들의 반응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성폭력피해자와 여성에 대한 편견, 특히 확증편향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36].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은 선택적 사고의 일종을 의미하는 편견으로서, 이에 따르면 사람은 본인의 신념과 부합하는 증거는 쉽게 찾는 반면에 신념에 반하는 증거는 찾지 않거나, 찾는다하더라도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37]. 이는 수사관이 지닌 편견이 수사상의 결론에 얼마나 크고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경찰공무원의 그릇된 편견이나 통념, 전문성과 민감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2차피해는 취약한 위치에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국가에 의한 피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권리확보를 통한 성폭력 대처와 예방은 매우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8].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여야만 하며, 이는 경찰업무수행을 위한 정상적인 방식이며, 그 과정에서 이유 있는 합리적 의심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그 정도를 넘어서거나, 일정한 편견에서 초래된 의심이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특정상황이나 행동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고, 그 진술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실제적 진실발견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이것이 수사관의 편견과 그로 인한 차별적 태도를 통제해야 할 이유이자 근거이다[5].

성폭력 피해자는 더욱 예민하여 상처받기 쉽다는 점과 의심과 편견에 의한 수사관의 태도가 2차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성인지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개인적·조직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사에 임하는 경찰관들 개인은 편견없이 피해자를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진단을 습관화하여야 할 것이며, 경찰조직은 2차피해의 민감성 증진과 피해자중심의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권수현, “성폭력 피해생존자에 대한 2차 피해 실태 및 대책: 성폭력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자료집, pp.178-198, 2006.
- [2] 박주상, “경찰의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4권, 제1호, pp.105-128, 2007.
- [3] 이대원, *경찰수사관의 수사인식*,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4] 김종욱, *경찰의 피해자수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5] 이주락, 탁종연, “수사관 편견의 실증적 근거에 관한 연구: 교통사고 피조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수사관의 편견을 중심으로,” 한국경찰비학회지, 제15호, pp.285-301, 2008.
- [6] 이명신, 양난미, 김정희, 문유정, “이차피해태도, 공정성 실천, 다전문직간 관계가 연계에 미치는 영향: 성폭력관련 경찰과 상담사를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제8권, 제1호, pp.43-85, 2015.
- [7] 이운호, *범죄학*, 제2판, 서울: 박영사, 2016.
- [8] 이미경,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2차 피해의 심층구조,” 여성학연구, 제23권, 제2호, pp.43-75, 2013.
- [9] J. Jordan, “Perfect Victims, Perfect Policing? Improving Rape Complainants’ Experience of Police Investigations,” *Public Administration*, Vol.86, No.3, pp.699-719, 2008.
- [10] 신성대, *성폭력 범죄 수사에 관련된 인권침해 실태분석*,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11] 류병관,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 방지 대책,” *법과 정책연구*, Vol.6, No.1, pp.395-421, 2006.
- [12] 황현락,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여성인권 보호방안,”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7, No.2, pp.375-406, 2007.

- [13] V. B. Lord and G. Rassel, "Law Enforcement's Response to Sexual Assault: A Comparative Study of Nine Counties in North Carolina," in(eds.) James F. Hodgson and Debra S. Kelley, *Sexual Violence: Policies, Practices, and Challenges in U.S. and Canada*, CT: Library of Congress Catalogue-in-Publication Data, pp.155-172, 2002.
- [14] K. E. Renner, "Reconceptualizing Sexual Assault from an Intractable Social Problem to a Manageable Process of Social Change," in(eds.) James F. Hodgson and Debra S. Kelley, *Sexual Violence: Policies, Practices, and Challenges in U.S. and Canada*, CT: Library of Congress Catalogue-in-Publication Data, pp.135-153, 2002.
- [15] J. F. Hodgson, "Policing Sexual Violence: A Case Study of Jane Doe v. the Metropolitan Toronto Police," in(eds.) James F. Hodgson and Debra S. Kelley, *Sexual Violence: Policies, Practices, and Challenges in U.S. and Canada*, CT: Library of Congress Catalogue-in-Publication Data, pp.173-189, 2002.
- [16] J. Du Mont, K. L. Miller, and J. L. Myhr, "The Role of Real Rape and Real Victim Stereotypes in The Police Reporting Practices of Sexually Assaulted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Vol.9, No.4, pp.466-486, 2003.
- [17] 김엘림, 윤덕경, 박현미,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0.
- [18] 이명신, 양난미, "남성경찰관의 성폭력 수사행동 (적극적 수사와 이차폭력) 결정요인: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Vol.63, No.1, pp.159-185, 2011.
- [19] 최인숙, 김정인, "성폭력 통념수용, 대인폭력수용 및 성역할-관련 태도가 공격적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Vol.20, No.3, pp.277-300, 2015.
- [20] 김애리, 박정열, "성역할 관련 태도가 강간통념 수용에 미치는 영향," *기본간호학회지*, Vol.15, No.1, pp.98-106, 2008.
- [21] 권주희, "성폭력 피해생존자에 대한 2차 피해 실태 및 대책: 형사사법절차·보도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자료집*, pp.200-207, 2006.
- [22] G. D. Bove and L. Stemac, "Psychological Evidence in Sexual Assault Court Cases: The Use of Expert Testimony and Third-Party Records by Trial Court Judges," in(eds.) James F. Hodgson and Debra S. Kelley, *Sexual Violence: Policies, Practices, and Challenges in U.S. and Canada*, CT: Library of Congress Catalogue-in-Publication Data, pp.119-134, 2002.
- [23] 김선영,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경찰, 의사, 교사, 법조인, 상담원, 언론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24] D. Abrams, G. T. N. Viki, B. Masser, and G. Bohner, "Perceptions of Stranger and Acquaintance Rape: The Role of Benevolent and Hostile Sexism in Victim Blame and Rape Procl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4, pp.111-125, 2003.
- [25] 신현기, 이상열,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6권, 제1호, pp.249-274, 2006.
- [26] 박지선, 김정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가해자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학연구*, Vol.19, No.2, pp.77-96, 2011.
- [27] 김동기, "가정폭력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Vol.16, pp.135-159, 2009.

- [28] 문지혜, 정혜정, “대학생이 지각하는 성장기 폭력 경험과 폭력허용도 및 데이팅 폭력의 관계,” 가족과 가족치료, Vol.23, No.4, pp.627-653, 2015.
- [29] 이윤희, 경찰학, 서울: 박영사, 2006.
- [30]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19, No.2, pp.39-66, 2005.
- [31] 우양호, “공직사회 성차별의 양가적 차원과 요인 검증: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Vol.27, No.1, pp.173-202, 2013.
- [32] 장미경, 조은경,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2차 피해 유발 질문의 사용과 수사관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강간통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 pp.129-137, 2004.
- [33] 김재엽, 이효정, 송아영, “가정폭력 경험이 남자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17, pp.27-52, 2007.
- [34] 김은주, “강간에 대한 경찰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Vol.9, No.2, pp.105-128, 2001.
- [35] S. L. Maier, “I Have Heard Horrible Stories...: Rape Victim Advocates’ Perceptions of the Revictimization of Rape Victims by the Police and Medical System,” Violence Against Women, Vol.14, No.7, pp.786-808, 2008.
- [36] O. Barnett, C. L. Miller-Perrin, and R. D. Perrin, *Family Violence across the Life Span*, 2nd ed., Sage Publications. 2005.
- [37] S. Nickerson Raymond, “Confirmation Bias: A Ubiquitous Phenomenon in Many Guis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2, No.2, pp.175-230, 1998.

저 자 소 개

권혜림(Hye-Rim Kwon)

정회원



- 2002년 2월 :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행정학사)
- 2007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석사)
- 2010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경찰학, 범죄학